

감정평가서

건명	오석환 소유물건(2025타경931)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남기영
감정서번호	S2506-1-3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라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추 용 우

감정평가액	이억육천오백만원정(₩265,000,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남기영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경매7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오석환 (2025타경931)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7.17	2025.07.09 ~ 2025.07.10	2025.07.17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아파트	1세대 이	아파트 하	1세대 여	- 백	265,000,000
	합계					₩265,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소재 “대구광역시 남구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아파트, “봉덕한라하우젠트퍼스트” 제102동 제4층 제406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3. 감정평가방법

가) 감정평가의 방식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 ①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
- ②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
- ③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
- ④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감정평가방법 적용에 관한 규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시산가액”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대상물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제12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액을 산정하되,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 수준 등 참고가격 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4.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5년 07월 17일을 기준시점으로 함.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내용 및 기타참고사항

가) 2025년 07월 09일, 10일 현장조사 및 탐문조사 등의 실지조사를 행하였음.

나) 대상 물건의 위치, 구조,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의 실지조사를 행하였으며, 본건의 호별 위치는 현장에서 탐문 조사된 사항을 근거로 표시하였고, 거주인 폐문부재 등으로 구조 확인 및 내부 마감상태 등은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일반적인 마감상태 및 통상설비 등을 참조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대상 물건의 소재지, 면적 등은 귀 원의 제시목록 등에 의거한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및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음.

2. 대상물건의 개요

(1) 기호 가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638 [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21길53-16(봉덕동)		
건물명, 층, 호수	“봉덕한라하우젠트퍼스트” 제102동 제4층 제406호		
용도	아파트	사용승인일	2018.02.23
면적	전유면적(㎡)		대지권면적(㎡)
	63.2513		33.9572

3.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 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면적(㎡)	거래금액 (천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A	봉덕동 163*	봉덕한라하우젠트 퍼스트 10*동	15층 150*호	63.2513	33.9572	298,000	4,711,365	2024.04.06
								2018.02.23
B	봉덕동 163*	봉덕한라하우젠트 퍼스트 10*동	13층 130*호	63.2513	33.9572	280,000	4,426,786	2025.02.03
								2018.02.2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거래단가 = 거래금액 / 전유면적

(2) 비교사례의 선정

본건과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인정되며, 최근의 거래사례인 거래사례(B)를 선정함.

4. 사정보정치의 산정

본건 거래시 제3자인 감정인이 개별적 사정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적용사례는 실거래 신고된 사례로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정상거래 사례로 판단됨.(1.00)

5. 시점수정치의 산정

(1) 시점수정 기준

- 1) 시점수정이란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치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임.
- 2)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유형별 매매가격지수(대구광역시 남구, 아파트)를 활용하여 기준시점까지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여 적용하였음.

(2) 시점수정치 산정

구 분	가격지수
거래사례의 거래시점 (적용 : 2025년 01월) 가격지수	101.0
대상물건의 기준시점 (적용 : 2025년 06월) 가격지수	98.6
시점수정치 : 기준시점 지수 / 거래시점 지수	98.60 / 101.00 ≒ 0.9762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개별요인 비교치의 산정

- 기호 (가) / 거래사례(B)

구분		비교치	비 고
조건	세부항목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대등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의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대등함.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개별적 요인	층별 효용	0.97	층별 효용 등에서 열세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등함.
비교치계	$1.00 \times 1.00 \times 0.97 \times 1.00$	0.97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비준가격)

기호	사례가격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비교(㎡)		시산가액(원)	감정평가액(원)
					대상	사례		
가	280,000,000	1.00	0.97624	0.970	63.2513	63.2513	265,146,784	265,000,000

III. 참고가격자료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기호 가	전유면적당 @4,500,000원/㎡ ~ @5,000,000원/㎡ 수준
------	--

2. 인근 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구분	소재지	건물명	층 호수	전유 면적 (㎡)	대지권 면적 (㎡)	평가금액 (천원)	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 목적
								사용승인일	
1	봉덕동 163*	봉덕한라 하우젠트퍼스트 10*동	2층 20*호	63.2513	33.9572	322,000	5,090,909	2022.11.29	시가 참고
								2018.02.2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결정의견

상기의 가격 참고자료(유사부동산 가격수준, 평가사례 등)에 의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비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2. 감정평가액

기호	구분	면적(㎡)	감정평가액(원)	비 고
가	4층 406호	63.2513	265,000,000	-
합 계			265,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21길 53-16	1638 봉덕한라 하우젠트 퍼스트 제102동	공동주택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0층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638	대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4층 제406호	8,011.8	8,011.8	265,000,000	
				1.소유권/대지권	33.9572 8,011.8x----- - 8,011.8	33.9572		
합 계							₩265,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소재 "대구광역시 남구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아파트단지,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일반차량 출입 용이하며,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

-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0층 건물 중 제4층 제406호 단위세대로서,
- 외벽 : 화강석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 벽지 붙임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 바닥 : 실내 바닥재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 창호 : 하이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 단지 북측으로 왕복 4차선, 남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근린상업지역(2024-12-10),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10), 제3종일반주거지역(2024-12-10), 시가지경관지구(중심)(2024-12-1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도시경관과 별도확인), 대로3류(폭 25m~30m)(2024-12-10)(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도시계획선 정비 및 지형도면 작성)(접합), 대로3류(폭 25m~30m)(2025-05-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녹색환경과 문의바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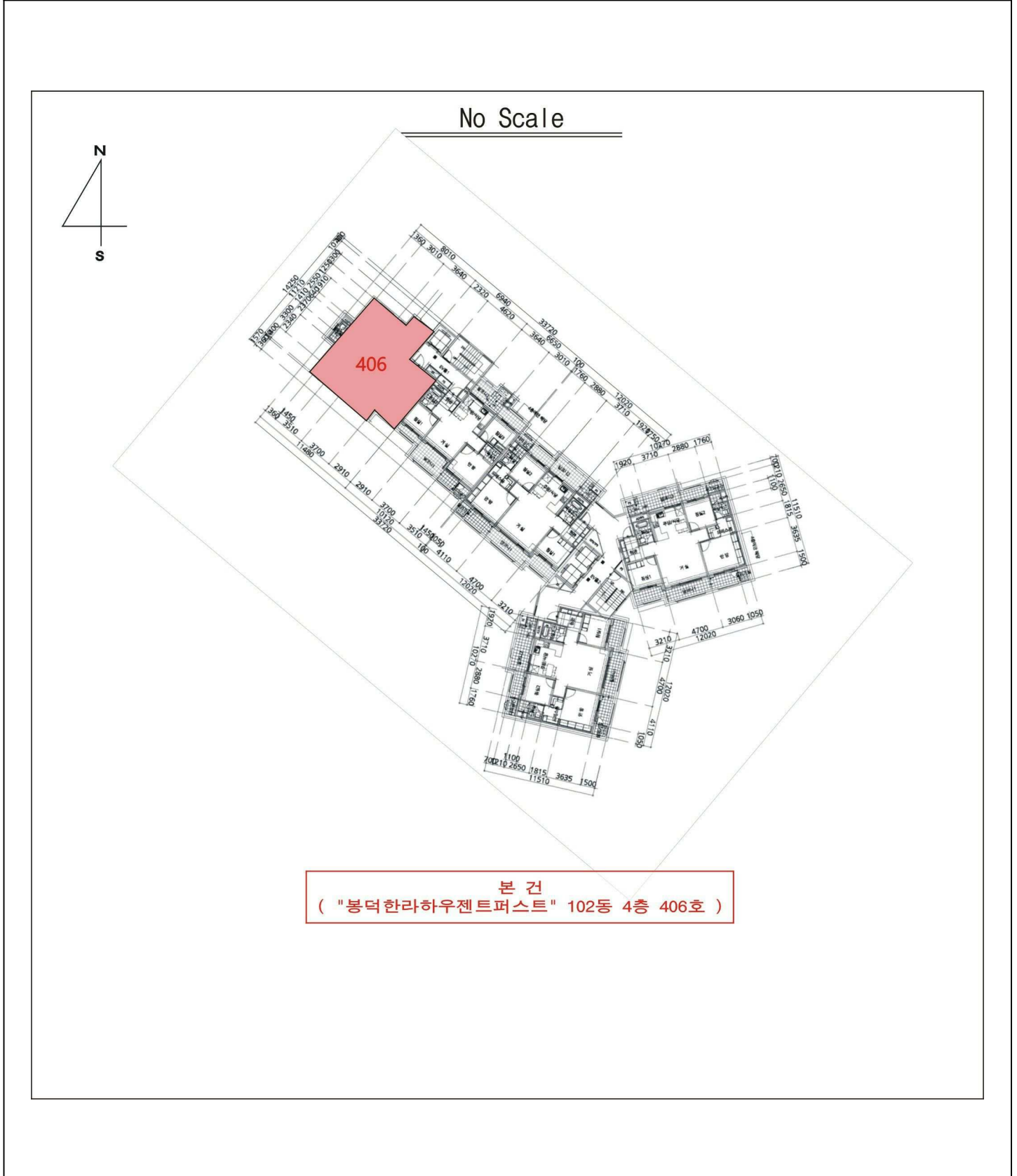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호 별 배 치 도





1



2